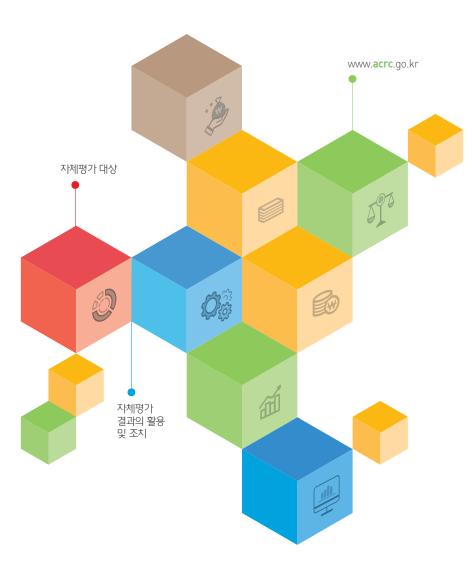


2021년도 자체평가 계획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계획, 2021. 3.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9)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506호

목 차

1. 2021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현안 대응 강화·성과 중심 평가로 국정성과 창출 견인

- 협업·갈등관리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각 주요정책과제에 **국정현안의 적극적인 이행 유인 부여**
 - * 기존 평가지표 배점 강화 등
- '정책성과·효과' 중심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 독려
 - 세부평가항목 중 '정책효과' 항목의 배점을 확대(20점→30점)하고, 국민 참여 정책평가 가점 유지(2점)
 - * 국조실 '성과관리 운영지침', 행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관련

□ 평가체계 합리화·환류 강화로 성과관리 강화

- **주요정책과제는 국정과제·연두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분기별 점검 및 평가결과는 **정책·예산 등에 적극 환류**
 - * '정책설계' 평가를 조기 실시(4월)하고, 연내 정책 수정기회를 부여
 - **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예산과 연동 예정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관련)
- '위원회 성과평가'와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성과평가로 이관 하는 등 개편하여,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평가 실시
 - *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10점)', '국정현안 기여도(가점3점)' 이관

2. 향후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부서별 의견수렴(~3.12)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3.31)

< 참고 > 2021년도 평가항목 주요 변경사항

「2021년 평가항목」 「2021년 평가항목」

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설계	1. 성과지표 적절성	10		1. 저채서게	1. 성과지표 적절성	10
(20)		2. 과제수단 적절성	1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3		2. 정책집행 (2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2 (1↓)
2. 정책집행 (20)	2. 상황변화 대응성	10			2. 상황변화 대응성	10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7			3. 협업 노력도	8 (1 †)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20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20
3. 정책성과	2. 정책효과	20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2. 정책효과	30 (10 ↑)
및 효과 (60)	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10			(삭제)	
	4. 정책 환류 노력도	10			4. 정책환류 성과	10
가점 (5)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기여도(3점)	5		가점 (2)	국민참여 정책평가	2 (3↓)

[※] 정책홍보·국정현안 기여도 실적은 **위원회 성과평가 시 통합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제7기: 2020. 5. 1. ~ 2022. 4. 30.]

○ 소위원회 2개,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15명 및 내부전문가 (기획조정실장) 1명으로 구성

('20.5.1.기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위원장		윤종 설 (61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現)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現)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장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50	심재승 (63년)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前)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영국 버밍험대 공공정책학 박사
		임준형 (68년)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現) 조달청 자체평가 위원 ■(現)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前)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위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옥화 (57년)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 ■(前) 문화재청 자체평가위 위원 ■(現) 문체부 공공기관 문화정보화수준평가위원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외부 위원		이주희 (72년)	청주대 법학과 교수	■(現)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 위원 ■(現)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 위원 ■(現) 청주지방검찰청 상고심사 위원 ■스위스 바젤대 법학 박사
		김찬동 (65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現)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위원 ■(現) 대전시 분권협의회 위원장 ■(現)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일본 동경대 정치(행정)학 박사
		박수정 (70년)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	■(現) 기재부 국고보조금관리위원 ■(現) 산자부 기타공공기관 운영위원 ■(現)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 ■(前)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
		홍진이 (65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現) 전라북도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위원 ■(現) 전기안전공사 성과평가 위원 ■(前)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 위원 ■(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학 박사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주재복 (64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現) 한국갈등학회 회장 ■(現)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前)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前) 행안부 민원제도 평가위원 ■고려대 행정학 박사
		최태현 (7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現) 과기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前) 행안부 지방정부혁신평가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재은 (66년)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前)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前)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위원 ■(前)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정책자문위원 ■(前)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위원 ■연세대 행정학 박사
외부 위원		강영주 (77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소장	■(現)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現)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現)한국조직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김선혜 (65년)	(사)갈등해결과대화 상임대표	■(現) 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現) 과기정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 석사
		박영만 (65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現)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現)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전문위원 ■경북대 법학 박사
		이연숙 (65년)	법무법인 로플러스 변호사	■(現)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 법학 석사
내부 위원		임윤주 (69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前)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前)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前) 권익위 대변인

○ 분야별 전문가 현황

(단위 : 명, %)

초게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총계	교수 연구원 법조인 시민사회 공공기관 소계					네누커젼	
16	7 (44%)	3 (19%)	2 (13%)	2 (13%)	1 (6%)	94%	1 (6%)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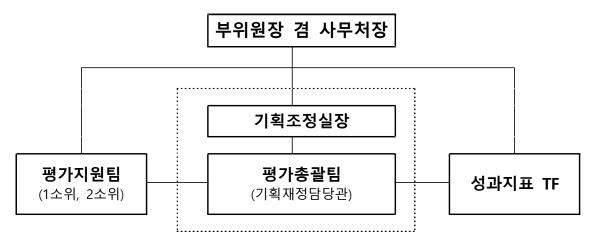
- (운영규정)「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권익위 훈령 제215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 (의사결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영상/서면회의 실시

□ 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위원회) 위원장, 각 소위원장,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 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 방향·주요 계획·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별 위원 구성
 - 각 위원은 1개 과제씩 정책 컨설팅 실시(정책자문·지표 검토 등) ※ 위원별 컨설팅 과제는 별첨 참조
- (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부문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기재부·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위촉하여 실시
- (성과지표 T/F) 자체평가위원 중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3월)
 -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3.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 운영체계



□ 구성현황

구분	팀원(직책)	역할
	기획조정실장	o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o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평가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	※ 세부추진사항 - 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6/15 <u>= 6</u>	박정희(기획재정담당관)	- 전체회의 개최(반기별) - 소위원회 개최 지원(수시)
	변규태(기획재정담당관)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지원(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나현성(청렴정책총괄과)	o 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o 소위원회 및 현장조사 지원
	이민이(청탁금지제도과)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민지(청렴연수원)	※ 세부추진사항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제1소위	문소희(국제교류담당관)	- 소위원회 개최(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평가지원팀	김혜은(심사기획과)	작성·제출(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이진아(보호보상정책과)	
	김지혜(제도개선총괄과)	
	임채식(부패영향분석과)	

구분	팀원(직책)	역할
	최준영(민원조사기획과)	o 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o 소위원회 및 현장조사 지원
	김남영(정부합동민원센터)	o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 세부추진사항
제2소위	최현민(행정심판총괄과)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 소위원회 개최(수시)
평가지원팀	김지혜(제도개선총괄과)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수시)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서상원(국민신문고과)	
	이주현(민원정보분석과)	

Ш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평가대상: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I. 반	청렴정책총괄과		
1. 사회 전	^번 부문의 청렴수준을	: 높인다.	청렴정책총괄과
I -1-①	공공부문 의 청렴 역량 강화	• 반부패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기과
I -1-2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시각지대 해소공직자 이해충돌 관리체계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I -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교육대상 다변화 등 청렴교육의 전방위적 확산청렴교육 인프라 강화	청렴연수원
I -1-4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IACC 성과 홍보 및 반부패 우수사례 전파 • 국민과 함께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청렴정책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2. 선제적	심사기획과		
I -2-①	부패사건 적극 대응 및 불공정 관행 개선	•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로 재정누수 방지	심사기획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I -2-(2)	부패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 보상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I -2-(3)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 · 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 구조적 부패 및 국민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I -2-④	공공기관의 불공정 및 채용비리 관행 개선	• 불공정 · 불합리한 공공기관 사규 점검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향상	부패영향분석과 채용비리근절추진단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II .	Ⅱ.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1.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혀	배결한다.	민원조사기획과			
II -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및 사회적 갈등의 주도적 해결	• 소외·취약계층 고충해소 강화 • 빈발·반복민원 발생의 근원적 해결 • 집단민원 적극 대응	민원조사기획과			
II -1-(2)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적 민원상담·처리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상담관 역량 강화노사관계의 안정화	정부합동민원센터			
II -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행정심판 권리구제 활성화 신속·공정한 권익구제 기반 마련 일 잘하는 행정심판 업무체계 구축 	행정심판총괄과			
2.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	여 정책을 개선한다.	제도개선총괄과			
II -2-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4대 안전망 강화 및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 제거 제도개선 • 제도개선 이행력 제고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II -2-②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선 • 행정변화를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신문고과			
II -2-(3)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시의성 있는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데이터 연계·결합으로 활용가치 제고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추진 	민원정보 분 석과			

□ 평가 제외

- 공통·지원 6개 부서 및 심사 2개 부서 제외*
 -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대상

-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정보화사업)이 평가대상
 - '21년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준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과제 선정
 - 다만, 인건비·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단위사업은 제외

단위사업	소관부서
① 청렴권익 문화 확산	홍보담당관
②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국제교류담당관 / 민간협력담당관 / 청렴연수원
③ 국민고충해소	민원조사기획과
④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	청렴조시평기과 / 부패영향분석과 / 청렴연수원 / 행동강령과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 신고자보상과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청탁금지제도과
⑤ 행정심판	행정심판총괄과
⑥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제도개선총괄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⑦ 청렴권익 행정 정보화	혁신행정담당관 / 국민신문고과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대상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평가대상 분야	소관부서
조직 관리	혁신행정담당관
정보화 관리	혁신행정담당관
인사 관리	운영지원과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주요 내용	배점
1. 정책설계	1.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10
(20)	2. 과제수단 적절성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1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2
2. 정책집행 (20)	2. 상황변화 대응성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여건·상황변화 대응 노력의 적절성	10
	3. 협업 노력도	○ 다른 기관/부서/민간과의 협업 노력	8
3.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정도	20
정책성과 및 효과	2. 정책효과	○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30
(60)	3. 정책환류 성과	○ '20년 평가 및 중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성과	10
3개 항목		8개 지표	100

- ※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 ※ 평가지표별 평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은 【붙임1】참조

2. 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부문

○ 부문별 평가총괄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예정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 중간점검

□ 점검기간

구분	시기	내용	대상기간
1차 점검	5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21.1.1 ~ 4.30
2차 점검 (상반기 점검)	7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과제별 주관 부서장 보고	′21.1.1 ~ 6.30
3차 점검	10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21.1.1 ~ 9.30

□ 점검내용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중간실적 점검
- 미흡과제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발굴, 조치계획 강구

□ 점검방법 및 결과반영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과제별 성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근거로 점검 실시
 - * 2차 점검(상반기점검, 7월)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 (5월), 3차 점검(10월)은 위원회 내부점검으로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점검
 - 과제별 점수·순위가 아닌, '정상추진/사전대비 필요' 여부 점검
- 점검 시 발굴된 개선·보완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본 평가 시 '정책환류 성과'로 반영

2. 자체평가

- □ **평가일정 : '22. 1. 7.** ~ **'22. 1. 11.** ('21.12.31. 기준으로 평가)
 - ※ 단, '성과지표 적절성'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선 평가
 - ※ '22. 1월 초 실적보고회와 평가 병행
- □ 평가대상: '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절차 및 방법

- < 상반기 평가 >
- (성과지표 적절성 평가) 성과지표 대표성·목표치 적극성 등 정책 설계 관련 항목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직후 평가
 -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8월) 시 위원별 평가결과 수정기회 부여

< 하반기 평가 >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과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과제별 실적 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한 후 평가지원팀 취합
 - ※ 과제별 실적보고서 양식【붙임3】참조(과제별 최대 30쪽)
-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로 과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 ※ 소위원회별 평가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이 전체 과제 평가
- (평가 실시) 자체평가위원은 각 소위별 과제에 대해 개별 평가
 - ※ 단, 본인이 컨설팅한 과제는 평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 제외
 - ※ 자체평가위원장은 2개 소위 과제를 모두 평가
- **(결과 집계 및 이의신청)** 위원별 점수 집계* 후 소관 부서에 회람 하여 평가항목별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실시

- * 평균-표준편차일치법을 통해 소위 간 편차를 보정하여 평가 공정성 제고
- * 평가결과(안) 부서별 공개 \rightarrow 이의신청 접수 \rightarrow 위원별 재평가 \rightarrow 결과 통보
- (결과 의결)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성과평가 반영)** 과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점수 산출 및 성과평가 반영
 - ※ 성과지표 적절성 및 목표치 달성도 점수는 성과지표 소관 부서에 반영
 - ※ 다수의 관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설정한 과제별 반영비율에 따라 부서 점수 산출

3. 평가결과 및 등급산출

□ 자체평가 결과 등급분포 기준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배분

순위 누적*	등급	과제 수(순위 / 총 14개)
상위 5%이내	1등급(매우 우수)	1개(1위)
5%초과 ~ 25%이내	2등급(우수)	2개(2~3위)
25%초과 ~ 40%이내	3등급(다소 우수)	2개(4~5위)
40%초과 ~ 70%이내	4등급(보통)	4개(6~9위)
70%초과 ~ 85%이내	5등급(다소 미흡)	2개(10~11위)
85%초과 ~ 95%이내	6등급(미흡)	2개(12~13위)
95%초과	7등급(매우 미흡)	1개(14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 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2.1월]

- 확정된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국조실 작성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평가총괄팀)
- 결과보고서에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

□ 자체평가 결과공개

- 국회 상임위(정무위)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통해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22.2월)
 - ※ '정책홍보' → '공통자료' → '정책·평가' 게시판

4.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계획 수립	3월	☞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및 자체평가계획(안) 검토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및 '성과지표 적절성' 등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4월	☞ 부서별 평가담당자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1차 중간점검	5월	☞ 4.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2차 중간점검 (상반기점검)	7월	© 6.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정	8월	☞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성과지표 적절성' 등 평가 수정
3차 중간점검	10월	☞ 9.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실적보고회 및 평가 실시	'22.1월	☞ 12.31. 기준 실적보고회 개최 및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결과 확정	′22.1월	☞ 평가 결과 집계, 이의신청,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결과 공개	′21.2월	☞ 평가결과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및 국회 보고(상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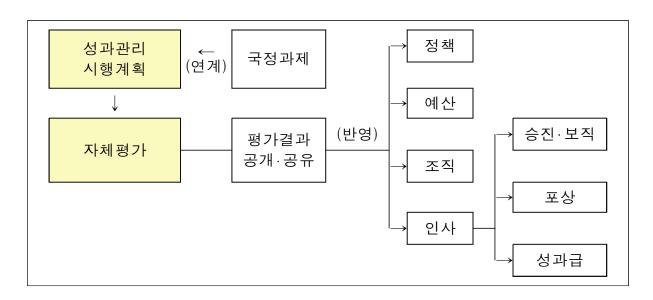
[※]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여부 등 결정

VI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는 적극 확산시키고, 미흡과제의 개선점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하고, 문제점의 진단 ·분석을 통해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 발굴·추진
- **부서·개인 성과평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략목표·주요정책과 부서·개인의 목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 제고 동기부여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환류

- 상반기 점검결과는 하반기 정책 추진 시 반영, 하반기 최종 점검· 평가결과는 '22년도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예산 환류

- 평가결과를 예산투입 필요성 재검토, 사업 조정 및 추진 방식 개선 등에 활용해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 예산 편성과 연계 강화**
-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미흡과제는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조직 환류

-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의 경우 조직역량 등에 대한 정밀분석·진단* 실시
 -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조직역량 진단결과를 인력 배치·전환,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직 효율성 제고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위원장 포상 수여('22.3월)
-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결정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
 -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52.0%) 반영
 - (4.5급 이하 직원)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45.5%) 반영
 - ※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성과평가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및 직원 간담회,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전파(수시)
 - ※ 점검회의 후, 평가담당 부서는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를 모든 부서 직원과 공유하고, 직원 대상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확산

붙임1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및 세부측정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배점
1. 정책설계	1.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10
(20)	2. 과제수단 적절성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1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2
2. 정책집행 (20)	2. 상황변화 대응성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10
	3. 협업 노력도	○ 다른 기관/부서/민간과의 협업 노력	8
3.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정도	20
정책성과 및 효과	2. 정책효과	○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30
(60)	3. 정책환류 성과	○ '20년 평가 및 중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성과	10
3개 항목		8개 지표	100

※ 가점 :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1-1. 성과지표 적절성(10점, 정성)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 성과지표의 대표성
 -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 ① (a),(b)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 ② ②,⑤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 ③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 ④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 ⑤ a,b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 가점(+0.5점) : <별첨1>의 13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1건 이상 설정하였는지 여부(단, 10점을 초과할 경우 10점으로 반영)

평정방법

② 성과지표 대표성(상/중/하)

- 성과지표와 과제내용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구체적인지 여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인지 여부 ※ 산출·결과지표로 성과지표 구성
- 성과지표의 정의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성과지표를 측정 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세부 측정기준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상/중/하) ※ '별첨2. 판단기준 예시' 참고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실적치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치가 있는 경우 과거 3년간 실적치 추세를 감안하여 판단
- 단, 목표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책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상승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목표치가 전년과 유사하거나 하락하여도 적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가능
- 법률 제·개정, 계획 수립 등 정량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유사사례 통계,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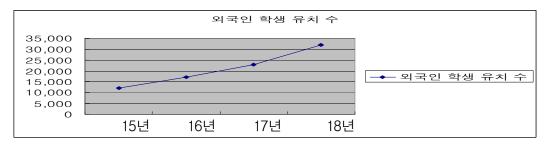
-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설명자료
- (목표치 적극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지표통계* 및 설명자료 * 최근 3년간 실적, 3년간 추세치 및 평균 등

< 별첨1 > 13개 사회적 가치의 주무부처와 주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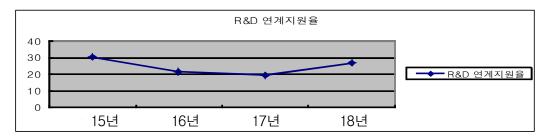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주무부처	주요 의미
인권	법무부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안전	행안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보건	복지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 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	고용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통합	복지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상생협력	중기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일자리	고용부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행안부 분권위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	산업부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기업의 사회적책임	산업부 중기부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	환경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참여	행안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시민사회	총리실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별첨2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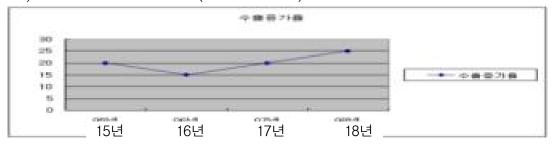
-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반영한 경우 : 상
 -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14~'15년 5%상승, '15~'16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 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중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중

-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 하향국면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중
-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중 [예:5% → 5.5% (상승률 10%), 50% → 55% (상승률 10%)]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판단
- 피평가부서는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 평가 판단자료 제시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단순히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국회의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이 지연되고 관련부서의 노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 (예시) IMD 국제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실시하는 국제 경쟁력 평가로 1989년부터 매년 실시 중
 - (예시)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국제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79년부터 매년 실시 중

1-2. 과제수단 적절성(10점, 정성)

-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과제수단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 과제수단의 적정성
 -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 평정방법
- ① ⓐ,ⓑ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 ② ②,⑤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 ③ ②,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 ④ a,b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 (5) (a),(b)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 ② **과제수단의 적정성**(상/중/하): 세부사업 등 관리과제의 하위 과제수단이 과제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판단
 - 과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을 망라하는 등 포괄적 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과제목표 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과제수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 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
- (b) **추진계획의 충실성**(상/중/하) : 추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관리과제 추진에 필요한 분기별 일정이 구체적인지 여부
 -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 계획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평가근거

- ㅇ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업무계획 등 관련 자료, 정책·사업 설명자료 등

2-1. 추진계획 준수정도(2점, 정량·정성)

평정방법

- 관리과제별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체 추진계획 건수' 대비 '일정을 준수한 계획 건수'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 산출
 - 산출산식 : 2 × 기한 내 완료한 계획 건수 전체 계획 건수
 - ※ (예)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추진계획'이 10건이고 그 중 8건만 계획된일정 내 완료한 경우, 2×0.8 =1.6 점 반영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 준수 여부

- 계획을 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아래 '예시' 참조)에는 그 사유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준수'로 인정 가능

세부 측정기준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평가근거

- ㅇ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ㅇ 최종 실적보고서

2-2. 상황변화 대응성(10점, 정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평정방법

- ① a,b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 ②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 ③ ②,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 ④ a,b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 (5) (a),(b)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상/중/하)

- 정책현장을 점검·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링'에는 정책현장 점검, 정책 관련 만족도·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의 활동을 포함

세부 측정기준

-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상/중/하)
 -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정책수혜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는지, 또는 갈등상황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는지 여부
 - *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 추진배경·필요성 등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 수정 등의 활동을 포함
 - 갈등예방/해소 외에도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정책 수정 등을 통해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여부

평가근거

ㅇ 모니터링 계획 및 대응, 최종 실적보고서

2-3. 협업 노력도(8점, 정성)

평정방법

○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른 기관 및 부서, 민간부문 등과 협업하였는지 역부를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8	6	4	2	0

○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른 기관 및 부서, 민간부문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는지
- 관계기관 등과 실제 업무협의 및 협업을 하였는지
-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세부 측정기준

평가근거

ㅇ 최종 실적보고서의 협업노력 관련 자료

3-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점, 정량·정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
 -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실적치' 비율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별로 점수를 산출(최대 20점)

평정방법

- 산출산식 : 20 × 성과지표 실적치 성과지표 목표치
 - ※ (예) 목표치가 100, 실적치가 80인 경우, 20×0.8 = 16점 반영목표치가 100, 실적치가 110인 경우, 20×1.0 = 20점 반영
-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는 '성과지표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예) 성과지표1 20점, 성과지표2 10점인 경우, 15점 반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

-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정량으로 평가
- 단, 목표치 미달성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 달성률 저하 요인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세부 측정기준

평가근거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측정결과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3-2. 정책효과(30점, 정성)

평정방법

ㅇ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

구분	구분 매우우수		7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①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 해당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성공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 * 정책수행으로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정책과제 추진 결과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정도

-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통계 또는 대표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정책효과와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정책효과를 종합 평가
- ※ 정책수행으로 인해 국민의 인식, 문화 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③ 신규사업 등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에는 향후 기대되는 효과 정도

- 제도·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으로 향후 정책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명확한 경우 우수 이상의 점수 부여 가능, 그 외의 경우 에는 보통 이하의 점수 부여
- ※ 향후 기대효과를 대상별/시기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근거

세부

측정기준

- 정책효과 판단 근거 자료 (담당부서 제출 실적자료, 관련 통계 및 수치)
- ㅇ 언론보도 자료

3-3. 정책환류 성과(10점, 정성)

평정방법

- 평가 및 중간점검 등에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개선 하였는지를 평가
 - a '20년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는지
 - **ⓑ** '21년 중간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는지

○ 정책환류 노력

구분	② '20년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5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배점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된 경우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세부 측정기준

구분	⑤ '21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5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배점	'21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21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21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된 경우	'21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21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실적만 있을 경우, 1개 항목점수의 2배를 반영. 단, 2개 항목 모두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부여

평가근거

- 평가 및 중간점검 결과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
- 조치계획 및 결과 자료

가점.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평정방법

○ 정책 추진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차등 반영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2위)	(3~5위)	(6~9위)	(10~12위)	(13~14위)
점수	2	1.6	1.2	0.8	0.4

○ 국민들이 정책추진 필요성 및 성과 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정책 필요성, 정책내용 적정성, 정책효과 달성도, 정책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4개 항목을 7점 척도로 설문
- 설문결과로 14개 과제의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0.4점 ~2.0점)

세부 측정기준

평가근거

ㅇ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① 관리과제명(I-1-①) (전략목표-성과목표-과제번호)

□ 추진배경(목적)

- 동그라미는 휴먼명조 15pt
 - 하이픈은 휴먼명조 15pt ※ 참고는 맑은고딕 13pt
 -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규정·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동그라미는 휴먼명조 15pt
 - 하이픈은 휴먼명조 15pt
 - *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수단 및 과제추진 계획 등을 <u>월 단위</u>까지 상세히 작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1.2월	
2/4분기		′21.5월	
3/4분기			
4/4분기			

수체자.	이해관계집단	믺	현장이견	바영계획	
ᅮᇄᇧ	이에근게日근	ᆽ		ᆣᆼᆀᆿ	

-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현장의견 반영 계획>

세부사업명	현장의견 수렴 필요성	현장의견 수렴 방법	현장의견 활용 방안

ו		Ö	٦ŀ
	ч		14

 \bigcirc

_

 \bigcirc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1」	′1 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2」}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3」}		a+b	a'+b'
		(전체단위 사업비) ^{4」}	(전체단위 사업비) ^{4」}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2」}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3」}		a+b	a'+b'
		(전체단위 사업비) ^{4」}	(전체단위 사업비) ^{4」}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 1」회계구분란에는 회계명 또는 기금명 표기
- 2」성과계획서상 재정시업의 관리과제명과 관리코드(일반재정·R&D·정보화 구분) 표기
- 3」단위 · 세부사업명 옆의 괄호에는 사업코드를 기재(예: 1101, 101)
- 4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포함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하나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2개 이상의 단위사업과 연계 되는 경우 해당 단위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단위사업(갯수 무관) 내의 일부 세부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세부사업명 및 사업별 금액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단위사업의 전체사업비를 표기
- [예시1]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1개 관리과제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억원)

	회계구분	'19	'20
검역검사 정보화(I-4-정보화①)			
① 검역검사 정보화(6632)	일반회계	71	75
		(71)	(75)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예시2]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2개 관리과제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억원)

	회계구분	'19	'20
농산물 안전성 관리(Ⅰ-1-일반재정①)			
① 농산물안전성관리(6032)	농특회계	480	477
		(480)	(477)
축산물 위생 안전성(I-1-일반재정②)			
① 축산물위생안전성(3739)	농특회계	42	43
		(42)	(43)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예시3]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내 일부 세부사업이 성과관리시행 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억원)

′19	′20
117	118
(128) 117	(131) 118
	(128)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자료수집	지표종류	
성과지표	'17 '18 '19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량화 여부	성격/ 내용
성과지표명			'20년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 (예시)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을 감안 하여 '20년에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성과지표명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 지표명 >

- (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설명
- (사회적 가치 관련성) 13대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서술
- (목표치의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실적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 < 지표명 >

- (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설명
- (사회적 가치 관련성) 13대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서술
- (목표치의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실적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 위 내용으로 '1-1. 성과지표 적절성'(대표성, 목표치 적극성) 평가 예정

★ 3쪽 내외로 작성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작성 방법 >
 - * 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포함(공통지표) 하여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 강화
 - 1개 관리과제 내 가능한 1개 이상 공통지표 포함
 - '21년 성과계획서와 공통지표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명 옆에 (공통)이라고 표시
 - * 목표치 : 신규 사업으로서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목표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21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거 실적 부분('18~'20년 실적)에는 "신규"로 표기
 - '21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인 경우, 목표치 변경 불가
 - * 측정방법 : 만족도조사, 통계확인, 성취도 확인 등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사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PCRM 고객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측정산식 :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 (측정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
- *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특히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제시,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이 부분에서 이를 미리 밝혀야 함
- *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 지표의 성과달성도 확인 시 참고할 사항, 표본의 대상, 성과측정 시 고려사항 등

[사례] 한 업체가 여러 개 제품을 인증ㆍ시험하였을 경우 별도 합산

≪ 참고자료 ≫

성과지표의 유형

- □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분류
 - ㅇ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

구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Ⅰ 특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시 동일한 결과 도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사례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o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제시되는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 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 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 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 수	·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 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수료 후 소득증가율	·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붙임3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양식

I - 1 - ①	관리과제명	
1. 과제 개요		
□ 추진배경(목적) → 0.5쪽 내외	
0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추진배경(목적)'과 동일하게 작성

□ 주요 추진실적 및 정책성과 [12.31.기준]→ 5쪽 내외

 \bigcirc

-

※

*

 \bigcirc

-

※

- ▶ 과제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내용 및 일정을 기술
 ★ 다년도 정책과제인 경우, 과거 실적과도 연계하여 기술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수치화된 성과[™] 위주로 작성
 ★ 성과관련 통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 통계 출처는 반드시 병기할 것

□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0.5쪽 내외
① (미흡사항)	
-	
☞ (개선·보완 사항)	
② (미흡사항) -	

- ▶ 당초 계획한 일정을 미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내용 기술
 - *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개선·보완 사항)

- * 당초 의도했던 수준보다 성과가 미흡했던 내용
- *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
-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 제도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 홍보 부족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야기
- * 기타 국민여론, 국회평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적 사례 등
- ▶ 각 꼭지 마지막(☞)에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방향을 반드시 기술
 - * 개선조치 계획은 내년도 언제쯤 추진 예정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

2.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 정책설계단계

평가지표(1-2): 과제수단 적절성(10점)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 2쪽 내외

- 과제수단의 적정성
 - *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 *-**

【근거자료】

□ 정책집행단계

→ 1쪽 내외

○ 과제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준수 여부
1/4분기	~~~ (00월)	~~~ (00월)	준수 / 미준수
			준수 / 미준수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일정 준수율			%

※ 외생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경우

지연 내용	지연 사유
<i>▶추진계획 내용</i>	▶전적으로 외생요인에 의해 지연되었는지 여부
(당초) <i>○</i> 월 → (이행) <i>○</i> 월	중심으로 작성

【근거자료】

평가지표(2-2): 상황변화 대응성(10점)

- ▲ 여건·상황 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 갈등예방/해소 등 대응 적절성

→ 4쪽 내외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충실성

-*

○ 갈등예방/해소 등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

[근거자료**]**

평가지표(2-3): 협업 노력도(8점)

▲다른 기관/부서/민간과의 협업 노력

→ 4쪽 내외

○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협업 성과

-

*

【근거자료】

□ 정책성과 및 효과단계

평가지표(3-1)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점)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1쪽 내외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도

※ 외생요인으로 인해 미달성한 경우

성과지표명	미달성 사유
	▶전적으로 외생요인에 의해 미달성된 경우, 미달성
	사유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을 작성

【근거자료】

*

평가지표(3-2): 정책효과(30점)

- ▲(당초 의도한 효과)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 ▲(부수적 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 과가 나타난 정도
- ▲(향후 기대효과) 효과가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효과

→ 8쪽 내외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 *
- 정책과제 추진 결과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정도
 - *
- 신규사업 등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 기대되는 효과 정도
 - *

【근거자료】

.

평가지표(3-3): 정책 환류 성과(10점)

▲'20년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부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부

→ 4쪽 내외

○ '20년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

*

○ '21년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여부

*

【근거자료】

붙임4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2021년 자 체 평 가 이 의 신 청 서					
① 관리과제명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이 속한 관리과제)				
② 신청 부서					
③ 신청 취지	○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요청하고자 하는 평가항목 또는 결과 (예: '2-2. 상황변화 대응성' 항목 재검토 요청)				
④ 신청 이유	○ 신청취지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서술 ○ ○				
⑤ 첨부 서류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제목 기재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2. 1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귀중					